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상 ‘본적’ 용어를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순위를 변경하는 한편,

귀환포로의 고령화 및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귀환포로에 대한 의
료기관 외 진료행위 지원, 간병비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임.

3.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 정비(시행령안 제3조 제7항)

- 1)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시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내
성차별적 용어인 ‘본적’에 대한 정비 및 변경 권고(‘24.10월)
- 2) 동법 시행령 등록대장 상 기재하는 ‘본적’은 과거 호주제 시행 시
용어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 필요

나. 연장자 위주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 변경(시행령안 제9조 제2항)

- 1) 시행령 제9조의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연장자 순으로 규정되어 나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급순위 결정
- 2)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을 ‘연장자 순’에서 ‘2인 이상인

경우 균등분배'로 변경

다. 진료행위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1호)

- 1) 현행 규정은 귀환포로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응급진료, 가정간호, 노인요양기관(요양원) 내 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 진료는 미지원
- 2) 의료법 제33조제1항제1호~5호상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외부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여 귀환포로의 고령화(평균 94세)로 인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료 수요에 대응 필요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간병비 지원 근거 신설(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4호)

- 1) 귀환포로의 고령화(평균 연령 94세)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중 간병비 지원에 대한 내용 미규정
- 2) 시행령 제13조(의료지원) 제2항의 의료지원 범위에 간병비 조항을 신설하여 국군포로 간병비 부담 경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의료지원 한도액 변경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구(舊) 호적이 있는 경우 본적)”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중 연장자 순”을 “다만 2인 이상인 경우 균등분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의료법」”을 “「의료법」 제3조로, “진료받은”을 “진료받은 비용 및 「의료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에 따라 의료기관 외부에서 진료받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확인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간병비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① ~ ⑥ (생 략) ⑦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사람의 <u>본적</u> , 가 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 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등록기준</u> <u>지(구(舊) 호적이 있는 경우 본</u> <u>적)</u> ----- -----.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① (생 략)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배우자 2. 미성년자인 자녀 <u>중 연장자</u> <u>순</u> ③ ~ ⑥ (생 략)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u>다만 2인</u> <u>이상인 경우 균등분배</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료지원) ① (생 략) 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 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 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3조(의료지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에서 진료받은 비용 중 본인 이 부담한 금액 2. 3.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 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및 <u>「의료법」 제33조제1항제1호</u> <u>에서 제5호에 따라 의료기관</u> <u>외부에서 진료받은 비용</u>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2. 3. (현행과 같음)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 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등으 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 하다고 확인될 경우, 다른 법 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 한 간병비 ③·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257